<u>아동학대</u> 신고의무 안내

112



<u>당신은</u>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당신의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직군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 방사 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정신의료 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통합 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아이돌보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체학대,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성학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강요하는 행위



정서학대

언어적 ·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방일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면 됩니다.







언제?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112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신고 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u>법무부</u> 피해아동 지원제도



법률 · 의사소통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심리적 지원

심리치료기관(스마일센터), 안전가옥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지원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저하게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신고를 이유로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